

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4-2)

□ 2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2월 13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급 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종업원 분 주민세 신고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2월 15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월 26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폐업신고 사업자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2월 29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귀속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지급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 귀속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1월 지급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¹⁾ ▪ 2023년 하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23년 하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

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한하며, 2024년 지급분에 대해서 매달 제출 외에 기존처럼 매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됨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제3항 제2호)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신고

(1)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기를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무신고 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에만 해당하며, 이 외의 업종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신철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채수 올림